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125 |
|------|-----|

제출년월일 : 1999년 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방법중 민간인과 계약에 의한 공동운영방안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므로서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운영방법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운영의 방법중 공동운영방법의 규정 삽입(안 제3조)

- 운영의 위탁⇒공동운영 및 운영의 위탁(안 제6조)
 - 위탁 또는 공동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에 농산물 유통업체운영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추가
 - 공동운영자의 신청서 제출방법 및 계약근거 명시
 - 공동운영시 평창군 세외수입 확보근거 명시

나. 공동운영에 따른 경영의 투명화 및 감독방안 명시(안 제10조)

- 공동운영의 경우 매분기 1회이상 결산검사 규정 신설
- 시설물관리 및 경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직원배치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규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영주체)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단체,일반인에게 위탁운영 또는 유통전문경영인과의 위탁경영계약으로 공동운영 할수있다.

제6조의 제목“(운영의위탁)”을“(공동운영 및 운영의 위탁)”으로 하며,동조 제1항 중 “위탁운영”을“공동운영하거나 위탁운영”으로 하고, 제4호중 “운영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농산물 유통업체 운영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위탁기간”을 “공동운영 및 위탁기간”으로,“수탁자”를 “공동운영자나 수탁자”로 하고,동조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경영계약에 의하여 공동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공동운영자”라 한다)와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후 심사하여 공동운영자 또는 수탁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약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

④공동운영자 및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사업목적의 극대화,군세의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공동운영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평창군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시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사용요율을 정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감독)”을“(경영의 투명화 및 감독)”으로 하고,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고,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동조 제3항중“제1항”을“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

① 군수는 공동운영의 경우 투명화를 위하여 매분기 1회이상 결산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경리업무와 시설물 관리 등 경영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공동운영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운영자와 수탁자의 사무소 및 공동운영 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 개 |
|---|---|
| <p>제3조(운영주체) <u>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제6조(운영의위탁)①제3조의규정에의하여 <u>위탁운영</u>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일반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1 ~3 (생략)</p> <p>4. <u>영농조합법인 및 운영경험이 있는 일반인</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u>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③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 <p>제3조(운영주체) <u>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단체, 일반인에게 위탁운영 또는 유통전문경영인과의 위탁경영계약으로 공동운영할 수 있다.</u></p> <p>제6조(공동운영및운영의위탁)①----- <u>공동운영하거나 위탁운영</u>-----</p> <p>1 ~3 (현행과 같음)</p> <p>4. -----<u>농산물 유통업체 운영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u>위탁경영계약에 의하여 공동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공동운영자”라 한다)와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후 심사하여 공동운영자 또는 수탁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약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u></p> <p>③<u>공동운영 및 위탁기간</u>-----, <u>공동 운영자나 수탁자</u>-----</p> |

④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공동운영자 및 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사업목적의 극대화, 군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공동운영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평창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시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사용요율을 정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의 투명화 및 감독)

①군수는 공동운영의 경우 경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매분기 1회이상 결산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경리업무와 시설물관리 등 경영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동운영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운영자와 수탁자의 사무소 및 공동운영 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